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동행해 주시는 사랑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 여러분.
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부위원장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서울시 불용물품을 타시도 및 자치구, 단체 등에 양여할 경우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와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.

- 현재 불용물품 양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불용물품 중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이 가능한 물품 등이 있기에 불용물품이 특정 단체 또는 자치구에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품을 양여 할 경우 양여받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, 가액, 용도, 양여하는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